

##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. 8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8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8. 28

(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기획감사실장 김종철

나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어 금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위원회 역할(제2조)

-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

○ 위원회 구성(제3조)

- 효율적 운영을 위해 「화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」와 통합운영

○ 회의개최(제4조)

-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개최

○ 화순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와 화순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시행규칙 폐지(부칙 제2조)

○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70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승광)

본 재정조례안은 금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재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7. 붙임 :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

##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

제3조(구성)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.

제4조(회의) ①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6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 조례 및 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화순군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와 화순군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